

3 응시자격

구 분	내 용
결 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(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'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안내' 참조)
연 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8세 이상인 자(2007. 12. 31. 이전 출생자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
학력 ·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한 없음
장애인 응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 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

※ 연령 외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23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예정일 기준

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구분	일 시	비 고	
원 서 접 수	2. 17.(월) 09:30 ~ 2. 24.(월) 17:00	국회채용시스템 (관련서류 우편제출)	
필기시험	장 소 공 고	4. 11.(금)	국회채용시스템
	1 차 · 2 차 시 험 일 자	4. 19.(토)	
	1 차 · 2 차 합 격 자 발 표	5. 23.(금)	국회채용시스템
면접시험	장 소 공 고	5. 23.(금)	국회채용시스템
	시 험 일 자	6. 9.(월) ~ 6. 11.(수)	
최종합격자 발표	6. 13.(금)	국회채용시스템	

※ 응시원서 결제취소 마감일은 2. 27.(목) 17:00입니다.

※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기 일정 외에 인·적성 검사 일정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으며,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.
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험장소·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.

가. 접수 방법 및 기간

- 접수 방법 :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
 - 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 원서접수등록 화면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- 접수 기간 : 2. 17.(월) 09:30 ~ 2. 24.(월) 17:00 까지
 - ※ 2. 24.(월) 접수 마감 시간은 17시입니다. 단, 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수수료 : 5,000원
 - ※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(본인명의 계좌만 가능) · 카드결제 · 휴대폰결제 중 선택하여 결제
 - ※ 응시수수료 외에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(계좌이체 · 카드결제 · 휴대폰 결제 비용)이 발생합니다.
 - ※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**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 단,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.**
 - (응시수수료 면제 대상)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3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사진 등록 : 원서접수 시 **본인 증명사진** 등록이 필요하니 **파일을 미리 준비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중에 등록**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파일 용량 200KB 미만, 파일형식 jpg · jpeg · gif · bmp, 본인 식별이 명확히 가능한 증명사진
 - ※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 확인용이므로, 모자 · 선글라스 · 마스크 착용 사진, 상반신 전체를 찍어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 사진, 화질이 낮아 희미한 사진, 얼굴이 일부만 나온 사진 등 얼굴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원서접수 취소기간 : 2. 17.(월) 9:30 ~ 2. 27.(목) 17:00 까지
 - ※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계좌이체 · 카드결제 · 휴대폰결제 비용)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
 - ※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(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제외)이 불가합니다.
- **가산특전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 등 해당 여부 및 전문자격증 관련내용(자격증명, 자격증번호, 발급기관, 취득일)을 정확하게 등록**하여야 합니다.
- **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등록**하여야 합니다.
 - ※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시험정보>자료실>“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”]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기재사항(가산특전 해당사항, 지방인재 여부 등) 오기로 인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표 출력기간 : 3. 28.(금) 9:00 ~ 6. 11.(수) 17:00 까지

6 장애인 구분모집

가. 적용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 - ※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 - ※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나. 장애인 구분모집 증빙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

- 서류제출 기한 : 4. 21.(월) ~ 4. 24.(목) (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)
-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: 증빙서류[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또는 장애인 증명서, 국가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1부]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

(0723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

※ 봉투에 “8급공채 (장애인 구분모집) : 응시번호” 기재할 것

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직렬(직류) 선택에서 일반행정(장애)를 선택하고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 (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 제외)

7 편의지원 신청

가. 적용대상

-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, 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 환자 등 아래 편의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항목	증빙서류 (각 1부)	비고
시각장애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(논문형 필기시험)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 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(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) · 점자문제지(희망자) ·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· 의사진단서 원본	기존 1~2급 기존 3급 2호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,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
시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(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) · 점자문제지(희망자) ·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지참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· 의사진단서 원본	기존 4급 2호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· 의사진단서 원본
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	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· 의사진단서 원본	기존 4,5급 1호
	·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· 의사진단서 원본	기존 5급 2호
	·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인 사람	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· 의사진단서 원본	기존 6급 중 좋은 눈 교정시력 0.3 이하
	·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기존 6급
뇌병변장애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(논문형 필기시험) · 휠체어 전용책상(높은 책상)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· 의사진단서 원본	기존 4~6급
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	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항목	증빙서류 (각 1부)	비고	
지체장애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(논문형 필기시험)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
	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/ 심하지 않은 사람	· 휠체어 전용책상(높은 책상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기존 1~6급
청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/ 심하지 않은 사람	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	기존 2~6급	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·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원본		
	임신부	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높낮이 조절 책상 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	·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		
	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	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	· 의사진단서 원본		

-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 제공(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)
 - 확대문제지 : B4 규격의 118%(14point) 혹은 150%(18point)로 확대된 문제지 제공
 - 확대답안지 : B4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 바랍니다(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.
- ※ 점자문제지는 최신 한국점자규정(문화체육관광부 고시)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.

다.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 구비시 유의사항

제출서류	유의사항																	
① 신청서	◦ 별첨서식에 따른 「편의지원 제공 신청서」 1부																	
② 장애인증명서	◦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(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택 1)																	
③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발급기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(www.hira.or.kr) →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(반드시 해당되는 병원 확인 후 발급) ◦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 되어 있는 원본 제출 ◦ 발급일자 : 2023. 2. 25.부터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됨. ◦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(다음 3가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(아래 표 작성 예시 참고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당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*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/및 시야각 명기 ② 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-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. 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. 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</th> <th>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시각 장애</td> <td>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</td> <td>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,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</td> </tr> <tr> <td>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/td> <td>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</td> </tr> <tr> <td>뇌병변 장애</td> <td>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/td> <td>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대상자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,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임신부</td> <td>상기인은 ①임신 30주,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, ②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기 타</td> <td>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	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	시각 장애	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	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,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뇌병변 장애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대상자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,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임신부		상기인은 ①임신 30주,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, ②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기 타		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구분		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																
시각 장애	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	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,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															
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															
뇌병변 장애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대상자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,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															
임신부		상기인은 ①임신 30주,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, ②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															
기 타		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 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사진단서(소견서)가 필요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(별첨서식)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 - 시험시간 연장, 답안지 대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(상급)종합병원의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 																		

라. 편의지원 서류 제출 및 편의지원 제공 여부 결정 절차

-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: ① 「편의지원 제공신청서」(별첨서식), ② 「장애인증명서」, ③ 「증빙서류」(나.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증빙서류 참고)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

(0723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
※ 봉투에 “8급공채 (편의지원)” 기재할 것

- 서류 제출기한 : 2. 17.(월) ~ 2. 24.(월) (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)
- 의사진단서 등 서류검토 후,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시험시간 연장, 확대문제지, 확대 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며, 신청 결과는 ‘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’ 게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(4. 11. 게시예정).
- ※ 면접시험 관련 세부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,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(02-6788-208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기타 유의사항

- 2024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편의지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이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합니다(별첨 「편의지원 제공 신청서」 1부만 제출). 단, 기 제출한 증빙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.
- ※ 2024년도 제2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 제출 진단서 발급일이 2023. 2. 25.이전 이라면, 2025년도 제23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편의지원 신청 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(발급일 2023. 2. 25. 부터 인정).

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

가.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

구 분	TOEFL		TOEIC	TEPS	G-TELP	FLEX
	PBT	IBT				
일반 응시자 기준점수	530	71	700	340	65 (Level 2)	625
청각장애 응시자* 기준점수	352	35	350	204	43 (Level 2)	375

※ 청각장애의 정도가 ‘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3급)’ 이거나, ‘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’ 인 응시자

※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(말하기 포함)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**편의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응시자**는 정해진 기간[2025. 4. 21.(월) ~ 4. 24.(목)]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.

다. 성적 등록 및 소명 방법

-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, 원서접수·취소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[2025. 4. 19.(토) 09:30 ~ 4. 22.(화) 17:00]에만 가능합니다.
 - ※ 원서접수 기간: 원서접수 단계에서 등록 / 추가 등록기간: [자격증/영어·한국사 추가등록] 메뉴에서 등록
 - ※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하는 시험성적의 경우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(수험번호)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**정확히 기입**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(통상 2년)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

가. 기준점수(등급)

시험의 종류	기준점수
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다. 성적 등록 및 소명 방법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, 원서접수·취소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[2025. 4. 19.(토) 09:30 ~ 4. 22.(화) 17:00]에만 가능합니다.
※ 원서접수 기간: 원서접수 단계에서 등록 / 추가 등록기간: [자격증/영어·한국사 추가등록] 메뉴에서 등록
※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하는 시험성적의 경우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9 가산점 적용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	가산비율 및 적용범위	
①	택1	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 (선발예정인원의 30% 이내)
		의사상자 등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 (선발예정인원의 10% 이내)
②		전문자격증 소지자 (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)	과목별 만점의 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은 1개만 적용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/의사상자 등 가점과 전문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.

나.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10%/5%/3%)을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 등의 가점의 경우 1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**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** 해야 합니다.
 - ※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(10% 또는 5%) 확인 :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 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
 - ※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(5% 또는 3%) 확인 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(☎044-202-3258)
- 가산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5. 4. 18.)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**원서접수 시** 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 등 **해당 여부를 등록**하고, 반드시 **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**하여야 합니다.

다. 전문자격증 소지자

- 응시자가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가산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5. 4. 18.)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**원서접수 시** 전문자격증 **관련내용(자격증명, 자격증번호, 발급기관, 취득일)**을 **정확하게 입력**하고, 반드시 **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**하여야 합니다.
- 전문자격증 등록은 **원서접수 기간 (2. 17.(월) 09:30 ~ 2. 24.(월) 17:00) 및 추가등록 기간 (4. 19.(토) 09:30 ~ 4. 22.(화) 17:00)**에 가능합니다.
 - ※ 원서접수 기간: 원서접수 단계에서 등록 / 추가등록 기간: [자격증/영어·한국사 추가등록] 메뉴에서 등록

라. 가산점적용 증빙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: ① 증빙서류(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, 전문자격증 사본)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

(0723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

※ 봉투에 “8급공채 (가산점) : 응시번호” 기재할것

- 서류제출 기한 : 4. 21.(월) ~ 4. 24.(목) (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)
-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자격증 정보를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, 불이익(성적·가산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0 지방인재 채용목표제

가. 지방인재 채용목표제

-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(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,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)

나. 지방인재의 범위

-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(응시원서 접수마감일(2025. 2. 24.) 기준)
 - ※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시험정보>자료실>“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안내”]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(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

-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%입니다.
-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
라. 실시방법

-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,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(10%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
마. 지방인재 증빙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

- 서류제출 기한 : 4. 21.(월) ~ 4. 24.(목) (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)
-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: ① 「지방인재 응시자 학력기술서」(별첨서식), ② 지방인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(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

(0723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

※ 봉투에 “8급공채 (지방인재) : 응시번호” 기재할것

-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등록하고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11 기타사항

-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국회인사규칙」,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, 「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.
-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8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2026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8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동일한 직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(영어·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).
 - 제1차시험을 면제대상자가 1차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.
-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원서접수·취소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[2025. 4. 19.(토) 09:30 ~ 4. 22.(화) 17:00]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미등록 또는 응시자의 귀책으로 해당 성적의 인증번호 등에 오기.오타 등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성적 인증 불가 시 해당시험 성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, 고시,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. 다만,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.
-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(언어논리영역·상황판단영역·자료해석영역)과 제2차시험(헌법·경제학·행정법·행정학)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합니다.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제2차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.
- 제1차·제2차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, 제1차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이 만점의 60%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「국회인사규칙」 제17조의3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‘학업의 계속’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국회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격 여부 판단, 합격 결정 및 기타 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응시자로부터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,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(02-6788-2081)으로 연락주시거나,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 [시험정보] 및 [시험안내]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편의지원 제공 신청서

<p>■ 장애유형</p>	<p>시각 장애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인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															
	<p>뇌병변 장애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															
	<p>지체 장애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지지체(장애정도가 심한 사람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지지체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) <input type="checkbox"/> 하지지체																
	<p>청각 장애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청각 장애																
	<p>기 타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(사유를 자세히 기재)																
<p>■ 신청사유</p>	<p>※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</p>																	
<p>■ 신청항목</p> <p>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내에서 복수신청 가능</p>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 width: 50%; vertical-align: top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음성지원 컴퓨터(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(논문형 시험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 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휠체어 전용책상(높은 책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높낮이 조절 책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중 화장실 사용(※ 임신부 등 편의지원 항목 해당자) 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 width: 50%; vertical-align: top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축소문제지(82%, 10 point, 확대독서기 지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문제지(118%, 14 point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문제지(150%, 18 point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답안지(B4규격 기입형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답안지(B4규격 표기형) <input type="checkbox"/> 점자문제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 </td> </tr> </table>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음성지원 컴퓨터(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(논문형 시험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 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휠체어 전용책상(높은 책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높낮이 조절 책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중 화장실 사용(※ 임신부 등 편의지원 항목 해당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축소문제지(82%, 10 point, 확대독서기 지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문제지(118%, 14 point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문제지(150%, 18 point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답안지(B4규격 기입형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답안지(B4규격 표기형) <input type="checkbox"/> 점자문제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음성지원 컴퓨터(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답안작성용 노트북 제공(논문형 시험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 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휠체어 전용책상(높은 책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높낮이 조절 책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중 화장실 사용(※ 임신부 등 편의지원 항목 해당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축소문제지(82%, 10 point, 확대독서기 지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문제지(118%, 14 point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문제지(150%, 18 point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답안지(B4규격 기입형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답안지(B4규격 표기형) <input type="checkbox"/> 점자문제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																	
<p>■ 인적사항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5%; text-align: center;">성</td> <td style="width: 25%; text-align: center;">명</td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연락처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집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민등록번호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휴대폰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E-mail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			성	명	연락처	집		주민등록번호		휴대폰					E-mail	
성	명	연락처	집															
주민등록번호			휴대폰															
			E-mail															

본인은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기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.
 편의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회사무처가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)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신청자 (인)

국회사무총장 귀하

※ **작성 요령** (휴먼명조체, 12(글씨크기)로 할 것. 여백이 부족한 경우 글씨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음)

1. 인적사항

- **응시번호**에는 시험 응시번호를 기재하며, **주소**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고, **E-mail**과 수시 연락 가능한 **전화번호**, **핸드폰번호** 등을 기재

2. 학력사항

- **고교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학력사항을 시간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되, 취학의무 면제 등으로 학력이 없는 경우는 “학력없음”,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는 최종학력을 기재**
- **기간** : 입학 ~ 졸업/재적(재학, 휴학)/제적(중퇴) 기간을 연, 월, 일 기재
 -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연, 월만 기재해도 무방
 - 편입학한 경우는 입학 연, 월, 일 앞에 ‘(편입)’ 을 표시하여 기재
- <작성 예> : (편입) 2004. 3. 1. ~ 2007. 4. 6.
- 작성일 현재 재적(재학, 휴학) 중인 경우는 재적일을 작성일까지로 기재
- **학교명** : 학교명칭을 모두 기재하되, 지방대학으로 인정되는 분교인 경우 대학명에 캠퍼스까지 기재
- **전공** : 졸업·재적 증명서 등에 표기되는 전공을 기재
- **졸업 / 재적 / 제적** : 기재한 학력이 작성일 현재 졸업인 경우는 **졸업**으로, **재학·휴학 중인 경우는 재적(在籍)**으로, **중퇴 등 제적된 경우는 제적(除籍)**으로 표기
- **학교 소재지** : 17개 광역자치단체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)중 하나로 표시

※ **학교 소재지를 기재하되 분교는 분교 소재지로 기재**

3. 학력증명서류 (학력기술서에 기재한 학력 중 해당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 제출)

- 취학의무 면제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사람: 주민등록등본(주소 변동 내역 포함)
- 최종학력이 지방 소재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등을 졸업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중인 사람: 최종학력 증명서류
 - 졸업자는 졸업증명서, 중퇴자는 제적(除籍)증명서, 재학·휴학중인 사람은 재학증명서
 - ※ 출신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교육행정기관(초·중·고교, 교육청)을 방문하거나, 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(<http://www.neis.go.kr>)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 - ※ 발급방법 : <http://www.neis.go.kr> → 홈에듀 민원서비스 → 온라인 발급/신청
 - 지방대학 졸업(예정)자: 지방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
 - 지방대학 중퇴·재학·휴학자
 - 중퇴자의 경우 제적(除籍)증명서: 제적(除籍)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적기간이 표기된 재적(在籍)증명서
 - 재학·휴학자의 경우 재적(在籍)증명서: 재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재학 증명서, 휴학생은 휴학증명서

4. 제출방법

- 서식에 따라 작성·출력한 후 개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학력증명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것
- 제출 : (0723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, 의원회관 811호 인사과 채용담당
 - ※ 봉투에 **“8급공채(지방인재) : 응시번호”** 기재할 것
- 문의 :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(☎02-6788-2081)